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2
----------	------

발의연월일 : 2022. 3. 2.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신동윤 의원

##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사업, 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제5조)
-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건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2.“보조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표지를 발급받아 그를 붙인 보조건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건 동반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건 동반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건 동반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건 동반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조건 동반 장애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